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12·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빛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·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
다.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, 분과위원회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, 자문단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마.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

임직원을 파견·겸임 요청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바.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 등의 공무원,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사. 위원회의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
아.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(안 제13조)

자.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-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12·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K-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기본 방향
2. 빛의 인증서 접수, 검증, 심사, 발급 및 수여
3.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
4.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자문 및 지원
5. 12·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활동과 관련된 사료의 수집·보존·기록·연구·교육·홍보
6. 빛의 혁명에 대한 정신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
7. K-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의견 경청·수렴 및 소통 활성화
8. K-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문 및 국내·외 관련 기관과의

교류·협력

9. 그 밖에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,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
2.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제2항제2호의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

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빛의 위원회 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빛의 위원회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지원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, 운전요원 등

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, 빛의 인증서의 원활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·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,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·자문단의 구성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3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71